

# 예 산 총 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78,494,579	23,354,837
일반회계	681,368,320	20,441,050
특별회계	97,126,259	2,913,788
공기업특별회계	16,121,587	483,648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16,121,587	483,648
기타특별회계	81,004,672	2,430,14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31,350	33,941
주차장특별회계	564,815	16,94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704,768	81,1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9,463,334	1,183,9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79,258	14,378
치수사업특별회계	1,017,810	30,53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0,427	15,013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34,313,863	1,029,416
도시개발특별회계	712,034	21,361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117,013	3,51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757,71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